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02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박대출 · 김정재 · 김성원
이인선 · 김태호 · 김상훈
윤영석 · 서명옥 · 최은석
엄태영 · 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10년”을 “10년(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u>10년</u>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 ----- -----<u>10년</u>(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u>20년</u>)-----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